

커먼즈론은 공동재산/권을 어떻게 보는가? - 세 가지 시선*

이 병 천**

1. 문제의 제기

커먼즈 운동이 날로 활기를 띠고 있다. 커먼즈 연구 또한 다방면으로 진전되면서 학술연구와 현장실천이 상호 침투하며 덧셈 효과를 내고 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커먼즈론이 “21세기 행동주의와 비판이론으로 최전선”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과장된 말이라 하겠지만 커먼즈론이 여러 분산된 부문연구들, 분산된 사회운동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새로운 희망의 언어, 통섭적이고 혁신적인 대안 패러다임의 실험실로 부상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에게 이미 커먼즈는 낯선 남의 동네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에도 그간의 연구와 실천 기반 위에서 커먼즈 네트워크가 결성되어 대규모 포럼(2018년 5월)을 진행한 바 있다. 모처럼 새로 재개된 한국사회포럼(2018

* 본 연구는 2017년은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 - 2017S1A3A2067220).

**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이사장

년 10월)에서도 커먼즈를 주제로 올린 독자적 세션이 개최되었다. 그리고 2018년은 가렛 하딘(Garrett Hardin)이 “커먼즈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1968) 논문을 발표한 지 50년이 되는 해로서 이를 기념해 국제 커먼즈학회가 커먼즈 주간(2018년 10월 4~12일)을 제창했었는데 제주대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등 한국의 커먼즈 연구단체들도 이에 호응해 각종 기념행사를 추진했다. 국제교류도 늘어나고 P2P의 설립자 미셸 바우웬스(Michel Bauwens)의 내한 강연을 들을 기회도 있었다.

확실히 한국의 커먼즈 논의는 최근 수년 동안 적지 않은 것을 축적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커먼즈의 현주소 및 가능성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 투기적 도시화와 다방면에 걸친 인클로저, 약탈적 축적에 대항하여 모두를 위한 도시를 만들어 내는 일, 특히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항하는 지역 자산화 운동 및 연구가 빠르게 활기를 띠고 있다. 경의선공유지운동에서처럼 국유재산의 사유화에 대항하는 공동 자산화 운동도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연구는 자원의 과잉이용 문제는 물론 과소이용이나 용도 변화에 따라 가치를 재창조하는 문제 그리고 폐쇄적 커먼즈가 갖는 무책임성의 문제 등을 연구 의제에 올려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커먼즈에 대해 아는 것이 적다. 한국에서 커먼즈라는 말은 아직 공론공간에서 명확한 시민권을 얻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카풀(공유승차) 서비스와 같은 ‘공유경제라든가 ‘사회적 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이다. 그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장에서 “커먼즈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어떤 합의점이 있는지도 잘 알기 어렵다. 물론 이는 커먼즈론의 갈래가 다양하므로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소통과 토론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커먼즈에 대해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됐지만 그 언어는 여전히 모호하며 심지어 어떤 “유동적 기표(floating signifier)”(Haiven 2016, 272; Caffentzis 2010, de Angelis 2012)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글은 한국에서 커먼즈론이 뿌리내리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해 보려

는 의도에서 쓰였다. 이를 위해 나는 커먼즈론들이 공동재산과 그 권리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 그것에 어떤 의미와 위상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커먼즈론의 접근방식은 거버넌스론, 생산양식론, 공동재산론, 공동권리론 등 다양하다. 환경, 사회적 필요, 지식 등의 자원의 속성이나 대면하는 갈등의 성격에 따라 구분되기도 하고, 법제도론과 사회적 실천이 대비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동재산과 공동권은 커먼즈론이 피해갈 수 없는 핵심 문제다. 사유재산, 국유재산의 이원론과는 다른 길의 새로운 재산권 원리, 이에 기반한 민주적 사회와 삶의 방식에 대한 문답이 커먼즈론의 핵심 문제군으로 들어 있기 때문이다. 공동재산 및 그 권리에 대한 고전적 실체는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선언 및 삼림헌장¹⁾(Linebaugh 2012[2008])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도전은 영속적 시초축적에 의해 해체되고 밀려난 그것들을 어떻게 복원하고 지킬 것인가, 더욱이 디지털시대 무형재와 이에 기반한 인간들 간의 협력이 인류에게 거대한 진보적 전환의 가능성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 스케일에서 새로운 혁신적 커먼즈를 창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많은 커먼즈론들은 공동재산 개념을 제기함으로써 공유재산(public property)과 사유재산(private property)의 전통적 이원론을 극복하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의 개념화 방식에 따라서 의미부여 방식도 상당히 다르다. 그런 차이는 많은 부분 학자들이 처한 사회적 문맥,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의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커먼즈론이 공유재산과 그 권리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커먼즈라는 언어가 착근되어 시민권을 얻고, 이를 통해 학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커먼즈로 무엇을 할 것인가”하는 물음에 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거버넌스론을 중심으로 한 미국 주류 커먼즈론, 배제되지 않을 권리에 기반을 둔 크로포드 맥퍼슨(Crawford MacPherson)의 이론, 그리고 공동재의

1) 나는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전통사회에서 이 정도로 명확하게 법적으로 공동재산에 대해 규정해 놓은 경우가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다.

보편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의 커먼즈론이 이 글의 검토 대상이다. 이들 이론의 선택은 다소 자의적인 부분도 있으나 연구동향을 살피는 데는 나름의 의미를 가질 것이다.

2. 미국의 커먼즈론²⁾ - 커먼즈의 비극 넘어서기, 거버넌스 제도론의 우위아래 공동재산/권의 포섭

아마 사람들에게 커먼즈라는 말은 낯설지 몰라도 “커먼즈의 비극”(한국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번역어로 널리 유포되어 있다)이라는 말은 꽤 익숙할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국제커먼즈학회가 하딘(Hardin 1968)이 “커먼즈의 비극” 논문을 발표한 것을 기념해 커먼즈 주간을 제창한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하딘이 제기한 “커먼즈의 비극”론은 커먼즈를 옹호하는 논자들 모두에 공통된 도전이지만, 특히 미국 커먼즈론의 주요 흐름은 이 문제에 대한 응답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는 데 특징이 있다. 오스트롬의 대표 저서 『공유의 비극을 넘어』(*Governing the commons*, 2010[1990])와 노벨상 수상(2009)에서 보듯이 그는 지배적인 커먼즈 비극 이데올로기와 정면 대결해 그 허구성을 비판했다. 오스트롬은 지역 자연자원의 자치문제 중심으로 커먼즈를 성공적으로 잘 작동하게 하는 제도적 거버넌스의 대안론을 발전시킴으로써 커먼즈의 연구에서 획기적 분수령을 만들었다.

미국의 주류 커먼즈론에서 공동재산이라는 개념 또한 하딘식 커먼즈 비극론에 대항한다는 이런 문제의식 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미국 커먼즈 학파에서 공동재산 개념은 물론 국유재산, 사유재산의 이원론을 벗어나는 독자적인 범주이지만, 그것은 특별하게 하딘이 “커먼즈의 비극”론

2)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을 비롯해, 하딘의 커먼즈 비극론에 대항해 대안 거버넌스론을 발전시킨 흐름으로 한정한다.

에서 말한 비극적 ‘커먼즈’와 구별하기 위해 정립되었다. 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의 이원론을 극복하려고 해도, 이는 커먼즈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그 때문에 이들이 비판하는 공사 이원론은 재산체제의 이원론 이상으로 거버넌스 방식의 이원론이라고 해야 한다.

커먼즈의 필연적 파멸을 주장하는 하딘의 비극 논리는 매우 단순 명쾌하다. 오늘날 주류 시장경제학의 앞부분에는 단골 메뉴로 ‘커먼즈의 비극’론이 등장한다. 나아가 지배적 현실과 이념을 대변할뿐더러 그 단순 명쾌함 때문에 인문사회과학 전 분야에 걸쳐 그리고 대중 교육이나 정치 분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딘의 커먼즈 비극론에 따르면, ① 커먼즈 자원(목초지)은 제한되어 있는 데도 목부들은 끝없이 사익을 추구한다. 하지만 이는 그들로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이다. 그 결과 커먼즈는 남용되어 고갈, 파멸한다. ② 하딘은 목초지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에게도 커먼즈의 비극 논리를 확대 적용한다. 그는 복지국가와 그 재분배정책이 ‘커먼즈에 대한 평등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 그 때문에 경쟁적으로 ‘과잉번식’(!)을 조장해 커먼즈의 비극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³⁾ 하딘은 심지어 유엔 인권선언에 대해서도 특히 ‘가족 크기’에 대한 선택을 가족의 자유에 맡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하딘이 비판한 이른바 ‘복지국가의 비극’ 문제는 미국 커먼즈론의 시야를 벗어나는 것이었고 그들은 ①에 초점에 맞추어 커먼즈의 대항적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발전시켰다.

미국 커먼즈론에서 공동재산의 개념은 하딘 비극론의 허점을 비판하고 하딘적 개념화와 구분을 도모할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비판은 하딘의 비극 모델에서 핵심 가정과 행동 원리를 겨냥하고 있다. 첫째, 모두에게 개

3) 복지국가에 대한 하딘의 비판은 오늘날 주류 경제학(공동선택론)에서 널리 유포되고 있는 논리다. 이에 따르면 공공재정은 일종의 ‘재정 커먼즈’로서 공공부채 증가와 재정위기는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소유관계와 책임소재 때문에 초래되었다. 하딘은 맬더스적 생태론자였다. 그의 글에 인간의 ‘과잉번식’(overbreeding)이라는 말이 핵심어로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되어 있는 커먼스라는 하딘의 가정이다. 목초지는 모두에게,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커먼즈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공개 접근이 아니라 자격조건을 갖춘 구성원에게만 제한적으로 개방된다.⁴⁾ 둘째, 목부들은 서로 소통하거나 커먼스의 전체 상황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고립적으로, 단기적으로 자기 사익을 극대화한다는 가정이다. 이 행동가정 또한 적절하지 않은데, 구성원들은 커먼즈의 관리 또는 사용규칙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이다. 나아가 구성원들은 협력하고 공유하는 인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홀로, 사익극대화에 몰두해 커먼즈를 고갈시킬 수 있는 ‘커먼즈 딜레마’ 또는 ‘사회적 딜레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 이 비판적 논의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적, 논리적 정리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다음의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째, 자유접근(open access) 체제와 공동재산 체제를 구분해 개념화한 것이다(Bromley 1986; Ostrom 1986; Dietz, Dolšak, Ostrom and Stern 2002). 자유접근 체제는 자원에 대해 아무런 재산제도가 없는 ‘재산권 부재’ 상황인 반면, 공동재산 체제란 경계가 있고 성원 자격을 가진 집단의 공동 소유 체제다. 성원이 아닌 자는 재산권의 행사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재산체제는 국유체제, 사유체제, 공동체제, 공개접근체제의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딘은 이 두 가지를 혼동한 것이며 그가 말한 이른바 커먼즈의 비극은 정확히 말해 ‘공개접근 체제의 비극’이라고 해야 한다.⁵⁾

둘째, 자원의 특성과 재산 체제의 특성을 구분했다. 정확히 말해 공동풀자원(common-pool resources, CPRs: 경합성이 있으면서 사용배제가 어려운 자원)과 공동재산 체제(공동재산의 소유 및 관리제도)를 명확히 구분했다. 구분 취지는

4) 하딘이 제도적 거버넌스가 전혀 없는 상황을 가정했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논자도 있다(Cole, Epstein and McGinnis 2014, 359-3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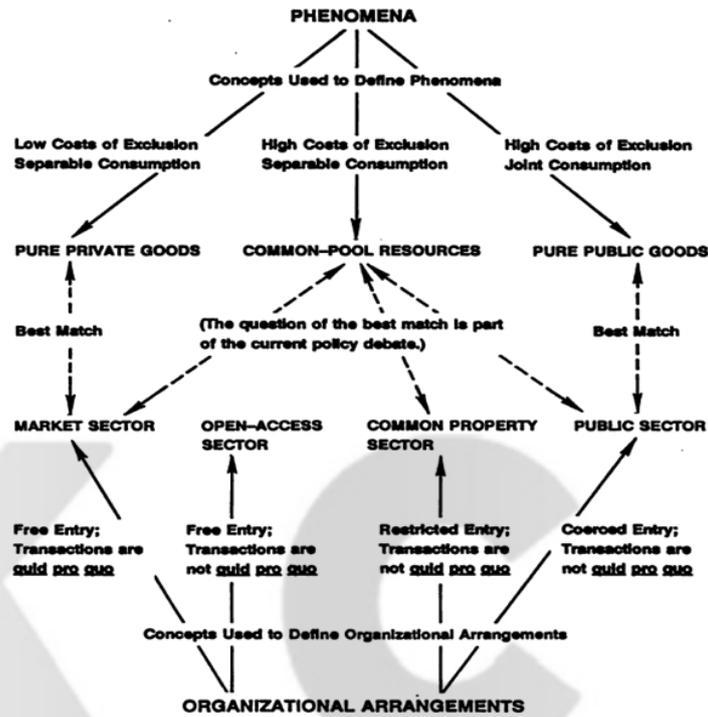
5) 하딘도 이후 자신의 견해를 수정했다. 자신이 말한 커먼즈의 비극은 ‘관리된 커먼즈(the managed commons)’가 아니라 관리되지 않는 커먼즈(the unmanaged commons)에 대한 것이며, 따라서 ‘관리되지 않는 커먼즈의 비극’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자기비판을 한 것이다.

이런 것이다. 자원에도, 재산체제에도 공동(common)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심지어 common property resources라는 말도 쓰이고 있는데, 자원은 그것에 내재된 특성이 있고 재산체제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적 관계를 제도화한 구성물이므로 양자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개념 구분을 통해 미국 커먼즈론은 자원과 재산체제간의 일원적 조응관계를 해체했다. 이에 따라 반드시 공동재산 체제로 관리해야 하는 어떤 자원들이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비판되었다. 공동재산에 대한 그들의 관심도 주로 자원의 어떤 속성이 공동재산 형태로 관리하는 데 용이한가, 효율적인가라는 제한된 관점에서 주어졌다. 오스트롬(Ostrom 1986)이 제시한 <그림 1>은 이 생각을 잘 보여준다.

이후 미국의 커먼즈론은 공동재산보다는 공동풀자원을 중심 대상으로 삼고 그 성공적인 제도적 거버넌스 방식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켰다. 이들의 연구에서 재산권에 대한 권리다발론이 나온 것은 주목되어야 한다 (Schlager and Ostrom 1992). 하지만 그것이 거버넌스 중심론의 흐름을 바꾼 것은 아니었다. 권리다발론에서 재산의 사회적 기능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니었다. 효율성 원리를 중심으로 재산체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전했다. 방대한 경험에 기반을 두면서 커먼즈의 비극을 극복하는 여덟 가지 성공적 제도설계 원리를 제시한 오스트롬의 대표 저작 『공유의 비극을 넘어』(Governing the commons, 2010[1990])은 이른바 ‘CPR상황’에서 커먼즈의 자치적 거버넌스 방식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연구다. 오스트롬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생물학자들이 유기체를 다룬다면 저자는 인간의 존재상황들 중 하나를 다룬다. 저자는 이 상황을 공동풀자원(CPRs) 상황이라 부를 것이다. (중략) 저자는 오로지 소규모 CPRs에만 집중할 것이다”(Ostrom 2010[1990], 61).

자원의 자연적 속성 및 거버넌스에 중점을 둔 미국의 커먼즈론에 대한 평가는 양가적이다. 그것은 커먼즈 비극론을 극복하는 지대한 기여와 함께, 공동풀자원 관리의 효율성이라는 문제들을 중심에 놓음으로써 공동재산 및 보편적 권리의 개념을 연구의 주변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낳았다(Johnson 2004; 정영신 2016). 이들이 사용한 공동(common)이라는 말에는 공동의 권리라는 지점이 희석화되어 있다.⁶⁾



〈그림 1〉 자원의 특성과 재산체제의 유형

3. 맥퍼슨의 재발견 - 두 가지 자유민주주의, 배제되지 않을 권리 그리고 공동재산

맥퍼슨은 자유민주주의의 비판적 진화를 도모하는 참여민주주의자로서 정치적 현상으로서의 재산권 문제를 다루었다. 맥퍼슨의 재산권론은 커먼즈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미 공동재산 개념을 제시하면서 공과 사 이원론을 넘

6) 하비(Harvey 2014[2012], 129; 140)는 하딘이 제기한 커먼즈의 비극론에 대해 목초지가 아니라 소를 공유하여 공동생산하는 전혀 다른 대안으로 응답했다. 이는 커먼즈의 생산양식론으로 넘어가는 또 다른 논의로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어서는 재산권론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맥퍼슨의 공동재산론과 재산권론으로부터 커먼즈론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적지 않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⁷⁾

맥퍼슨은 독특한 관점에서 현대 주류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본질적 약점을 파헤쳤다. 그는 주류 자유민주주의가 알고 보면 소유적 개인주의라는 인간관, 즉 끝없는 욕망을 경쟁적으로 추구하는 소비자 및 소유자의 가정에 근거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비판을 넘어 대안도 제시했는데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유적 버전이 아니라 발전적 버전이다. 즉 인간의 잠재적 발전역량(developmental power)의 자기실현이라는 가치와 그러한 인간 가정에 기초해 참여적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재건하는 것이 맥퍼슨의 대안이었다⁸⁾. 그러나 맥퍼슨이 자신의 역량발전 민주주의론과 ‘재산의 정치이론’(Macpherson 1973, 120-140)을 전개하면서 국유와 사유의 이원론을 넘어 공동재산론을 제시한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⁹⁾. 우리는 오스트롬적 패러다임이 그 잠재력을 약화시킨 공동재산 및 그 권리 개념을 커먼즈론의 중심 개념으로 올려놓을 목적으로 오스트롬 이전의 맥퍼슨의 논의에서 이 부분을 조명함으로써 그를 권리기반 커먼즈론의 계보학 속에 편입시키려고 한다.

맥퍼슨에 따르면 민주주의로 가는 모든 길은 재산으로 통한다. 사람들의 생활 수단 및 노동 수단에 대한 접근은 곧 재산제도에 의해 좌우된다. 생활 및 노동 수단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바

7) 나는 이미 이전 글(2004, 2013)에서 맥퍼슨을 다루었지만 그의 공동재산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

8) 맥퍼슨의 사상은 리처드 토니(Richard Tawney)와 해럴드 라스키(Harold Laski), 청년 마르크스(Young Marx)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Townshend 2000, 6-11). 그 뿌리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좋은 삶의 사상이 있다. 맥퍼슨은 재산권사상의 흐름을 정리한 책에서 토니의 『탐욕사회』 중 5장을 수록하고 그를 기능적 재산과 비기능적 재산을 구분한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 토니의 생각은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실체적 경제론에도 영향을 주었다(이병천 2018a, 149-150).

9) 흔치 않은 연구로는 Bromley(2008; 2016)를 참고할 것.

로 계급적으로 분열된 사회를 유지하는 수단이다. 나아가 자본주의 시장 사회에서 개인과 기업이 끝없이 그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힘, 즉 ‘추출 역량’(extractive power) - 이는 발전역량과 대비된다 - 은 재산제도에 의해 유지되고 조장된다(Macpherson 1973, 120). 문제는 재산권의 집중과 계급 간의 비대칭적 권력관계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의 발전을 윤리적 목표로 삼는 자유민주주의에 내재한 근본적 모순이라는 사실이다(Macpherson 1993[1978], 341). 그러므로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와 평등한 자유사회의 추구는 필수적으로 그에 합당한 재산이론과 실천을 요구하는 것이다. 맥퍼슨은 재산/권에 대한 몇 가지 지배적 관념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대안적 명제를 제시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상적으로는 재산을 물건(thing)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재산은 물건에 대한 권리다. 재산은 물건의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해 ‘시행가능한 권한’(enforceable claim)이다.

둘째, 재산권이 시행가능한 권한인 이상, 그것은 사회의 인정이 낳는 창조물이자 정치적 현상, 즉 사람들 간의 정치적 관계이다. 그리고 이때 권한의 강제력을 실현시키는 주체는 국가권력이다.

셋째, 재산권은 개인의 권리다. 이는 재산권에 대한 맥퍼슨의 명제들 중에서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재산권의 옹호(폐기가 아니라)는 근본적으로 인간 개개인이 인간다워지기 위한 필요로부터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맥퍼슨의 생각이다(Macpherson 1993[1978], 344).

위의 세 가지 명제를 제시한 위에서, 맥퍼슨은 주류 자유(민주)주의 재산권론의 핵심을 도마 위에 올린다. 그는 묻는다. 왜 재산권이 타인의 사용과 혜택을 배제하는 배타적 권리(exclusive rights)여야만 할까? 왜 개인적 재산권을 배타적 재산권과 동일시해야 할까? 맥퍼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떤 물건의 사용이나 편익에 대한 개인의 시행가능한 권한에는 사회 또는 국가가 共同의 사용(common use)을 위한 것이라고 천명한 어떤 것의 사용 또는 편익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그의 권리가 포함된다. 사회 또는 국가는 어떤 사물들, 예컨대 共同의 토지(common lands), 公有공원, 도시 도로, 고가도로를 共同의 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천명할 수 있다. 이때 그 사물들을 사용할 권리는 사회의 각 성원들이 시행가능한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개인들의 재산이다. 그 권리는 무제한적 권한일 필요는 없다. 국가는 예컨대 公有토지의 사용을 성원들에 할당할 수도 있고, 도로나 共同의 물에 대한 사용에 대해 제한을 가할 수도 있다 (이는 국가가 사유재산의 사용에 대해 한계를 정하는 것과 같다) (중략) 국가는 자신이 共同사용을 위한 것으로 선포한 사물에 대해 각 개인들이 갖는 권리를 창출하고 시행한다. (중략) 국가는 권리를 창조하고 개인들은 권리를 갖는다. (중략) 공동재산은 각 개인들이 어떤 사물의 사용이나 편익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에 의해 창조된다”(1973, 124)¹⁰⁾

맥퍼슨은 발전적 자유민주주의 윤리적 목표라 할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의 발전을 위한 필요로부터, 다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부합되는 선상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이끌어 내고 있다. 이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실현 가능케 보장해주는 재산적 기반이 곧 공동재산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맥퍼슨이 공동재산에 대해 사회 또는 국가가 ‘공동사용’을 천명한 것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동재산이 결코 국지적 자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수준에서 모든 성원들이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산적 기반임을 말하는 것이다. 맥퍼슨에 따르면 사회란 중세촌락처럼 작을 수도 있고 국민국가처럼 클 수도 있으며 나아가 국제법에서 공해를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듯이 국민국가보다 더 클 수도 있다(Macpherson 1973, 124 주석9). 따라서 그는 자세한 논의를 전개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이미 마을, 도시, 국가, 지구촌 등 다중 스케일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론으로서 공동재산론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스케일에서 공동재산권이

10) 거의 같은 구절을 맥퍼슨(1993[1978], 326)에서도 볼 수 있다.

어떻게 중층적으로 제도화될 것인지 하는 것은 열린 과제로 남겨져 있다. 그리고 공동재산과 국유재산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맥퍼슨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개별 국민들을 그 사용과 수익으로부터 배제한다는 점에서는 사유재산과 동일하다. 국유재산권은 일종의 배타적 법인의 권리와 동일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Macpherson 1993[1978], 327-328).

맥퍼슨은 재산권 성격의 변화에 대해 역사적 설명을 제공하면서 공동재산을 옹호한다. 그에 따르면 사유재산이 배타적인 권리로서 권한 행사에 아무 제한이 없고 사회적 기능의 수행조건에서 해방된 것은 17, 8세기의 산물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현상이다. 그 이전 사회는 오랜 시기 동안 사유재산뿐만 아니라 공동재산에 대해서도 친숙했다. 이는 사상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가 공동재산을 옹호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근대 초기 장 보댕(Jean Bodin)조차 일정 정도 공동재산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유적 자본주의 시장사회가 발전하면서 공동재산의 오래된 사고가 사라진 것이다. 맥퍼슨은 공동재산/권리를 밀어내면서 근대 재산권이 봉건적 권리와 비교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에서 절대적 권리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근대 재산권은 사용권일뿐더러 처분권 또는 양도권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소유자가 어떤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조건도 면제된 권리이다”(Macpherson 1973, 126).

위의 설명으로부터 우리는 맥퍼슨이 공동재산을 단지 재산형태로서만이 아니라 배타적 사유재산권 출현 이전 시기 역사적으로 면면히 존재해왔던 공동재산 및 커먼즈의 전통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관점에서 제기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그에게서 공동재산은 성원 모두의 기본적 권리와 불가분하다. 맥퍼슨의 경우 공동재산은 사유재산의 배제적 권리에

대항해 사회성원 모든 이의 배제되지 않을 권리기반, 성원 각인의 인간다운 삶의 필요를 보장할 물질적, 제도적 기반인 것이다.

맥퍼슨은 자신의 권리기반 공동재산론을 더욱 전개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사회발전을 전망하면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로서 재산권을 한층 확대시킨다. 이 권리는 사회 전체가 성취한 것의 이용 또는 편익으로부터 배제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로 확대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① 축적된 노동수단, 즉 사회의 축적된 자본과 자연자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및 거기서 노동하는 데 따라 소득을 얻을 권리), 그리고 ② 사회의 전체 생산으로부터 소득을 얻을 권리, 즉 일과 무관하지만 온전히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필요한 것에 대한 소득권(예컨대 기본소득)이 포함된다. 나아가 맥퍼슨의 전망에 따르면 기술진보에 따라 노동수단에 대한 접근의 의미도 약화되면 재산권의 의미는 좋은 삶을 위한 역량신장의 권리와 이를 위한 정치권력에 참여할 권리, 사회 형태를 선택할 권리로 전혀 새로운 내용으로 전환된다(Macpherson 1973, 136-140).

4. 이탈리아의 커먼즈론

- 공동재의 기본적 권리, 사회운동, 자본에서 커먼즈로

맥퍼슨은 공동재산을 사회 성원들이 공동이용 자원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로서, 나아가 각인이 자유로운 인간적 발전을 위해 저마다 다양한 사회형태와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까지 개념화하였다. 이것은 오늘의 커먼즈론이 발전적으로 계승해야 할 귀중한 유산이다. 그러나 맥퍼슨의 정치 개념은 의외로 협소하다.¹¹⁾ 그는 재산을 정치적 현상이라고 제시해 놓고도 재산권 및 공동재산권을 국가가 창조한다고 말한다. 또 그

11) 조셉 카렌스(Carens 1993)에 수록된 존 킨(John keane), 샹탈 무페(Chantal Mouffe) 등의 비판을 참조할 것.

는 국유재산을 단지 배타적 재산이라고만 말할 뿐 그 적극적 기능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국가 밖의 정치에서 사회운동이 연출하는 갈등과 체험 학습의 동학,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수놓은 수탈을 통한 축적과 이에 대한 대항 운동의 동학이 맥퍼슨의 공동재산론 및 배제되지 않을 권리론의 시야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공동재산권을 배제되지 않을 권리로만 파악하는 것도 일면적이다. 공동재산권은 배제되지 않을 권리일뿐더러 보다 능동적으로 새로운 재산양식 및 삶의 양식을 구성할 권리로 파악되어야 한다.

우리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의 전성기에 그것과 대항 속에서 커먼즈론을 발전시킨 중요한 흐름을 이탈리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탈리아의 커먼즈론으로는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Hardt and Negri 2009)의 연구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글의 관심은 이들보다는 이탈리아 커먼즈 운동의 문맥을 기반으로 공동재산에 대한 기본적 권리론을 중심으로 커먼즈론을 발전시킨 흐름이다. 이탈리아에서 커먼즈의 의제는 어떤 재산 또는 재화들이 공동체 속에서 정의되고 인지되는 방식을 사회운동 차원 및 법적 차원에서 독창적으로 재정의하는 경로를 보여 주었다. 이탈리아에서 사회운동이 커먼즈라는 언어를 내세워 국공유재산의 점거를 정당화하고자 할 때도 그들은 외삽적으로 국가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공동체 안에서 모두를 위한 ‘사회적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깔고 있었다. 그럼으로써 커먼즈의 사고가 체제 내에서 파열구를 내면서 새로운 민주적 사회혁신의 공간을 열었다(Quarta and Ferrando 2015, 279).¹²⁾ 물 등의 보편적 필수재로부터 도시공간의 커머닝으로 번져나간 이탈리아 커먼즈운동의 전개에서 특별한 것은 비판적 법학자들이

12) 이들은 네그리와 하트의 커먼즈론은 이탈리아 커먼즈 운동의 맥락 및 경로와는 유리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커먼즈 운동은 영국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영국의 경우는 ‘작은 정부 큰 사회’를 지향한 보수당 지배체제(카메론)에 적용하면서 ‘지역자산화운동’이 나타났다. 커먼즈운동에서 이탈리아는 능동적 경로, 영국은 수동적 경로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행동하는 집단지성으로 사회운동과 밀접히 결합해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고 커먼즈론을 재창조했다는 사실이다. 유고 마테이(Ugo Mattei)를 비롯해 이들의 커먼즈론은 이탈리아 커먼즈운동의 정치적, 법적인 함의를 이론화한 것이면서 동시에 이탈리아적 국지성을 넘는 일반적 내용도 함께 갖고 있다¹³⁾.

영어권에서 말하는 커먼즈(communs)는 이탈리아에서는 베니 코무니(beni comuni)라 부른다. 그 의미는 공동재(common goods) 또는 공동재산(common property)이다¹⁴⁾. 베니 코무니의 정확한 의미는 이탈리아의 문맥으로 들어가야 알 수 있다. 그것은 공유재산(public properties)의 사유화 원칙 및 한계를 수립하면서 민법의 공유재산(public property)조항을 수정한다는 법개혁의 맥락이었다. 이런 법개혁의 바탕에는 공유재산의 대대적 사유화를 둘러싼 심각한 사회적 쟁투가 가로놓여 있었다. 법개혁을 위해 법무부 산하에 로도타위원회(Rodotà Commission)(2007년)라는 특별 기구가 만들어졌다. 동위원회의 진보적 개혁안은 이탈리아에서 법적으로 최초로 공동재산 범주를 도입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개혁안은 나라 자산을 공동재, 공유재, 사유재의 세 범주로 구분하고 공동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공동재는 그 효능이 기본적 인권의 충족 및 인간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기능적인 재화이다. 또한 공동재는 미래세대의 편익을 위해서도 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공동재의 법적 권한(legal title)의 보유자는 공공기관일 수도, 사인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든 그 보유자들은 법의 한계 내에서, 그 절차에 따라 공동재의 집단적 결실을 보장해야 한다. 보유자가 공공법인인 경우 공동재는 공공기관에 의해 관리되며 시장거래 대상이 아니다. 공동재의 양도는 법으로 허용되는 경우 제한적 기간 동안에만 인정되며 기간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중략) 공공공동재의 규율은 시민들의 사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누구나 공동재의 보호 및 사

13) 라파엘 자나타(Zanatta 2016)는 마테이를 비롯한 이탈리아 커먼즈 연구의 흐름을 ‘튜린학파’라고 이름 짓고 있다.

14) 영어 표기로는 common goods 또는 commons로 번역된다.

용과 관련된 권리의 법적 보호에 접근할 수 있다. (중략) 국가는 정당하게 다른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체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위의 로도타위원회 정의를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전통적인 공(公)과 사(私) 이원론을 넘어 공동체 범주를 제시하고 있다. ② 공동체를 기본권 실현과 인간의 자유로운 발전에 “기능적인” 필수적 효능을 제공하는 재화로 정의하고 있다. ③ 어떤 자원이 그런 의미의 공동체 범주로 규정된 경우, 법적 소유권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공동체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일반 성원의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④ 공동체를 보호함에 있어 미래 세대의 편익까지 시야에 넣고 있다. ⑤ 그리고 공동체의 규율은 시민들의 사용 정도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고, 누구나 공동체의 보호권 및 사용권의 법적 보호에 접근할 수 있다고 쓰고 있다. 그런데 이탈리아 헌법에서도 사유재산을 보호하되 만인의 접근이 가능케 하고 “사회적 기능”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로도타위원회의 공동체 정의는 헌법에도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야 한다(Bailey and Mattei 2013, 981). 그러니까 이탈리아 비판 법학자들은 헌법에 천명된 원리를 불러내면서 대대적 사유화와 상품화 공세가 일어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커먼즈 범주를 복원하고 재창조했다고 하겠다.

얼핏 보면 로도타위원회의 공동체론은 국유재산, 사유재산 그리고 공동재산을 병렬하는 식의 평범한 삼분론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는 공동체론에 내장된 급진적 함의를 읽지 못하는 것이다. 왜 그런가? 특히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Mattei 2018; Quarta and Ferrando 2015).

첫째, 국가에 의한 공유(公有)재산의 무분별한, 대대적 사유화 상황과 마주해 공동재산론을 제기한 부분이다. 정부가 철도, 항공로, 건강서비스를 사유화하거나 상수도, 대학을 사유화할 때, 이는 다름 아니라 공동체

로부터 공동재를 수탈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도로를 건설하거나 여타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사유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국가가 소유하는 공유재산은 실질적으로 공동체를 위한, 만인의 기본적인 필요를 위한 공동재산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너무 취약하고 쉽게 사유화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공사이원론을 넘어 공동재 개념을 제시하고 법적으로 공유재산이라 해도 성원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공동재산으로서 실제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법적 개념으로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사용과 거버넌스에서 ‘공유재의 커먼화’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재산권을 권리다발로 볼 때 공유재의 커먼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물론 공공(公共)협치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의 성격에서도 ‘국가-공동체’와 ‘국가-권력장치’를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 나아가 공동재를 기본권의 실현과 인간의 자유로운 발전에 기능적인 재화라는 일반적 범주로 정의해 놓고, 어떤 자원이 공동재로 규정되면 법적 소유권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일반 성원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실로 급진적인 함의를 담고 있는 대목이다. 로도타위원회에서 명시한 공동재는 대부분 자연 자원이지만¹⁵⁾ 그 목록은 건강, 교육, 토지 및 주택, 지식, 문화자원, 도시공간 등으로 충분히 열려 있다. 중요한 것은 법적 소유권과 관계없이 모든 성원이 공동재 접근권을 가져야 하고 모든 이가 공동재의 보호와 결실에 관해 권한을 가진다고 한 부분이다. 민주적 원리, 자치 및 분권의 원리에 입각해 공동재의 사용과 거버넌스를 모든 성원에 열어 놓고 있는 것이다. 로도타위원회의 공동재 개념을 이어받아 마테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5) 열거된 공동재는 다음과 같다. 강, 하천, 샘물, 호수 및 기타 수역; 공기; 법으로 정한 국립공원; 숲과 나무 지역; 높은 고도의 산악 지역; 빙하 및 만년설 지역; 자연보호지구로 설정된 해안; 보호받는 야생동물; 고고학적, 문화적, 환경적 재화.

“공동재¹⁶⁾는 양보받는 것이 아니다. 공동재는 우리 삶의 필수재로서 모든 이에 속하는 자원이다. 모든 사람은 공동재에 대해 평등한 몫을 가질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의해 공동재에 대한 평등하고 직접적인 접근권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능을 보장받아야 한다. 모든 사람은 공동재에 대한 평등한 책임을 가지며, 공동재의 부를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직접적 책임을 공유한다. 공동재는 시장의 힘에 의해 조성된 사유 및 국유 재산 양자 모두에 근본적으로 대항하며, 해방과 사회정의의 강력한 원천이다”(Mattei 2012)

이탈리아의 커먼즈운동은 로도타위원회¹⁷⁾의 개혁안 제출, 물사유화를 반대하는 국민투표(2011)의 승리를 거친 후 제2라운드로 이어졌다.¹⁷⁾ 나폴리를 비롯해 여러 도시에서 점거운동이 일어났으며 커먼즈와 도시행정 간의 협치 또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났다.¹⁸⁾ 마테이는 이탈리아 커먼즈운동의 참여 관찰자로서 그 정치적, 법적 함의를 이론화하면서 아래로부터 제헌 권력으로서 커먼즈 사회운동이 갖는 발본적인 사회혁신적 의미를 설파했다(Mattei 2013; Bailey and Mattei 2013; Mattei 2015).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탈리아적 국지성을 넘어 근대성에 대한 근본적 비판과 대안을 모색하는 커먼즈의 법이론을 발전시켰다. 마테이는 역사적 근대성을 “커먼즈에서 자본으로의 전환”, 국가·자본의 동맹 및 권력집중에 의한 커먼즈의 파괴와 수탈, 영속적인 시초축적 과정이라고 요약한다.¹⁹⁾ 법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헌정주의가 이 폭력적 과정에 크게 봉사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러면서 대안적 과제를 “자본에서 커먼즈로의 전환”이라고 제시

16) 영문은 commons로 되어 있다.

17) 의회(상원)는 로도타위원회의 개혁안을 무시하고 대대적인 사유화를 도모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분노의 사유화반대 물결과 베니 코무니 운동을 일으켰고 국민투표(2011년)결과 물 사유화가 부결되었다. 이런 이탈리아의 커먼즈 투쟁 과정에서 물은 시민의 기본권 혹은 보편적 필요에 부응하는 공동재/재산으로서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18) 이탈리아에서 커먼즈로서의 도시의 발전방식에서 나폴리와 볼로냐는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Patti 2017; Bianchi 2018).

19) 마테이는 - 오스트롬상을 수상했지만 - 오스트롬에 대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한다(Mattei 2011; Capra and Mattei 2015). 마테이는 폴라니가 말하는 이중 운동을 커먼즈론의 관점에서, 인클로저와 커먼즈의 이중운동으로 새롭게 재구성했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²⁰⁾ 마테이는 다음과 같은 짧은 말로 그의 대안적 사유를 요약하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커먼즈라는 틀의 거대한 확장, 즉 ‘더 적은 정부, 더 적은 시장, 더 많은 커먼즈’이다. 나는 이것이 사회통합의 대안적 서사를 소생 시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2012)²¹⁾

5. 결 론

커먼즈론은 자본과 국가, 미디어의 힘, 그 동맹의 지배력에 대항해 아래로부터 공동의 것, 공동의 사회생태적 관계와 자원을 지키고 새롭게 창

20) 인클로저(및 자본에 의한 커먼즈의 포섭)과 커먼즈의 이중운동 또는 갈등적 공진이라는 사고는 De Angelis(2007, 2017)에서도 볼 수 있다. 마테이가 커먼즈의 법학을 전개하고 있음에 반해, 드 안젤리스는 커먼즈의 정치경제학을 전개하고 있다.

21) ‘더 적은 정부, 더 적은 시장, 더 많은 커먼즈’는 마테이(Mattei 2011)의 결론이기도 하다. 이 명제와 관련해 두 가지를 지적해 두고 싶다. 첫째, 마테이가 커먼즈의 무조건적 확장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커먼즈가 공공성에 반하는 자폐증에 빠질 수 있으며 공공영역의 반성적 숙의 또는 해석투쟁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사회적 헌정주의의 비판(이는 네그리와의 논쟁에서 귄터 토이브너(Gunther Teubner)가 제기한 논점이었다)을 수용한다(Bailey and Mattei 2013, 1006-1012). 우리는 공공적 숙의를 거친 커먼즈를 ‘공공적 커먼즈(public commons)’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자치 커먼즈이면서 공공적 커먼즈가 아닌 경우는 매우 많다. 둘째, “더 적은 정부”라는 마테이의 생각은 매우 논쟁적인 지점이며 새로운 사회국가를 지향하는 학자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마테이 커먼즈론의 빈틈을 짚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더 검토가 필요하다. 내가 읽은 바로는 마테이의 논의에는 스케일 문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잘 보이지 않는 듯하다. 거버넌스의 스케일 문제와 관련하여 하비는 오스트롬을 비판하면서 커먼즈와 국가의 두 수준에서 ‘이중의 정치적 공세’(double-pronged political attack)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Harvey 2014[2012], 159-160; 이병천 2017, 246-247).

조하는 문제, 그 과정에서 제도와 주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문제를 다룬다. 커먼즈론의 접근방식은 거버넌스론, 생산양식론, 공동재산/권론 등 다양하다. 갈등의 층위에 따라서도 갈라진다. 그러나 공동재산과 공동권은 커먼즈론이 피해갈 수 없는 핵심 문제에 해당한다. 이 글은 커먼즈론의 흐름들이 공동재산/권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고 있는지, 그 함의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세 가지 커먼즈론을 선택해서 살펴보았는데 문제의식에 따라 공동재산과 공동의 권리를 다르게 개념화하고 의미 부여도 달랐다. 미국의 주류 커먼즈론은 하딘의 커먼즈 비극론에 대항해 비극을 넘어서는 제도적 거버넌스 방식 문제에 집중했다. 공동재산에 대한 관심은 자원의 어떤 속성이 공동재산 형태로 관리하는 데 효율적인가라는 관점에서 제한적으로 보여졌다. 공동풀자원의 효율적 관리방식이라는 중심 문제들로 인해 공동재산은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사회성원의 보편적 권리로서 공동재산을 어떻게 창조하느냐의 문제는 시야 밖에 있었다. 우리는 맥퍼슨을 권리기반 공동재산론의 대표적 논자로 재발견하고자 했다. 그는 사유와 국유의 두 배제적 재산체제, 사회적 기능에서 면제된 지배권에 대항하여 배제되지 않을 보편적 권리론의 입장에서 공동(사용)재산 개념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다중 스케일에서 공동재산권을 중층적으로 제도화하는 생각을 보여 주었다. 나아가 맥퍼슨은 배제되지 않을 권리를 각인이 자유로운 인간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형태와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까지 확장했다. 이는 현재성을 갖는 소중한 유산이다. 그러나 그의 정치개념은 협소하다. 국유재산을 단지 배제적 재산이라고만 봄으로써 그 적극적, 사회적 기능의 가능성, 커먼화의 길에 대해 논의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국가 밖의 정치에서 사회운동이 연출하는 갈등과 실천 학습의 동학을 그에게서 볼 수가 없다. 공동재산권을 배제되지 않을 권리로만 파악하는 것도 일면적이다. 공동재산권은 그뿐 아니라 보다 능동적으로 새로운 재산양식, 삶의 양식을 추구할 권리로 파악되어야 한다.

이탈리아의 커먼즈론은 신자유주의 전성기에 역동적 사회운동에 기반

을 두고 공동재의 보편적 권리론을 발전시켰다. 이들에서 공동재는 성원의 기본적 권리 실현과 인간의 자유로운 발전에 기능적인 재화로 개념화되었다. 공동재로 규정된 재화에 대해 법적 소유권과 관계없이 그 사용과 거버넌스 권리를 모든 성원에 열어 놓았다. 또 공동재의 보호에는 미래세대의 편익까지 고려되었다. 이탈리아 커먼즈론은 사유재산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헌법적 원리를 커먼즈론의 구성을 위해 다시 불러냈다. 재산의 사회적 기능론은 생활세계의 필요로부터 커먼즈론을 구성하는 접근방법과 함께, 맥퍼슨과 퀘를 같이하는 것이다. 나아가 이탈리아 커먼즈론의 대표주자인 마테이는 이탈리아적 국지성을 넘어 역사적 근대성을 “커먼즈에서 자본으로 전환”의 역사 또는 인클로저 대 커먼즈의 이중운동의 역사로 파악하고 이에 대해 ‘자본에서 커먼즈로 전환’이라는 대안기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그들의 논의는 커먼즈와 공공성 그리고 거버넌스의 스케일 문제 특히 사회국가와의 관계 문제 등에서 중요한 토론지점을 열어 놓고 있다.

참고문헌

- 이병천. 2004. 「공화국과 자본주의」. 『시민과 세계』 6. 35~69쪽.
- 이병천. 2013. 「어떤 경제/민주화인가」. 『시민과 세계』 22. 106~125쪽.
- 이병천. 2013. 「소유, 통제, 축적: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화해와 불화」. 이병천·전창환 편,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 파주: 돌베개.
- 이병천. 2017. 「공공성, 자치사회화, 커먼즈: 공동협치의 투트랙 전략을 향해」. 윤여일·정영신·최현 위음, 『공동자원론 오늘의 한국사회를 묻다』. 과천: 진인진. 235~288쪽.
- 이병천. 2018a. 「경제문명사와 실체적 비시장경제학-인간의 살림살이를 중심으로」. 『경제사상과 전환시대 자본주의』. 서울: 해남.
- 이병천. 2018b. 「공유지 혹은 커먼즈, 개념의 자리찾기-새 희망의 기획?」. 『2018한국사회포럼자료집』.

- 정영신. 2016.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 커먼즈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접근을 위하여」. 『ECO』 20(1). 399~442쪽.
- Bailey, S., and Mattei, U. 2013. "Social movements as constituent power: The italian struggle for the commons". *Indiana Journal of Global Legal Studies* 20(2). pp.965~1013.
- Bianchi, I. 2018. "The post-political meaning of the concept of commons: The regulation of the urban commons in Bologna". *Space and Polity* 22(3). pp.287~306.
- Blomley, N. 2008. "Enclosure, common right and the property of the poor". *Social & Legal Studies* 17(3). pp.311-331.
- Blomley, N. 2016. "The right to not be excluded: Common property and the struggle to stay put". in Amin, A. and Howell, P., eds. *Releasing the commons*. Abingdon: Routledge. pp.89~106.
- Bromley, D. W. 1986. "Closing comments at the conference on common property resource management".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Common Property Resource Management, April 21-26, 1985*.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p.591~598.
- Caffentzis, G. 2010. "The future of 'the commons': Neoliberalism's 'plan B' or the original disaccumulation of capital?". *New Formations* 69. pp.23~41.
- Carens, J. H. et al. 1993. *Democracy and possessive individualism: The intellectual legacy of C. B. Macpherson*,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Capra, F., and Mattei, U. 2015. *The ecology of law: Toward a legal system in tune with nature and community*. Oakland, CA: Berrett-Koehler Publishers.
- Cole, D. H., Epstein, G., and McGinnis, M. D. 2014. "Digging deeper into Hardin's pasture: The complex institutional structure of 'the Tragedy of the Commons'". *Journal of Institutional Economics* 10(3). pp.353~369.
- De Angelis, M. 2007. *The beginning of history*. London: Pluto.
- De Angelis, M. 2012. "Crises, Capital and Cooptation: Does Capital need a Commons Fix?". in D Bollier and S Helfrich, eds. *The wealth of the commons: a world beyond market and state*. Amherst, MA: Levellers Press.
- De Angelis, M. 2017. *Omnia sunt communia: On the commons and the transformation to postcapitalism*. London: Zed Books Ltd.
- Dietz, T., Dolsak, N., Ostrom, E., and Stern, P. C. 2002. "The drama of the commons". *The Drama of the Commons*.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pp.3~35.
- Haiven, M. 2016. "The commons against neoliberalism, the commons of neoliberalism, the

- commons beyond neoliberalism”. *Handbook of neoliberalism*. Abingdon: Routledge. pp. 299~311.
- Hardin, G. 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3859). pp.1243~1248.
- Hardt, M., and Negri, A. 2009. *Commonwealth*. Cambridge, MA: The Harvard University Press.
- 정남영 · 윤영광 옮김, 『공통체』. 서울: 사월의 책, 2014.
- Harvey, D. 2012. *Rebel cities: From the right to the city to the urban revolution*. NY: Verso. 한상연 옮김, 『반란의 도시』. 서울: 에이도스, 2014.
- Johnson, C. 2004. “Uncommon ground: The ‘poverty of history’ in common property discourse”. *Development and Change* 35(3). pp.407~434.
- Linebaugh, Peter. 2008. *The Magna Carta Manifesto*. Berkely: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정남영 옮김, 『마그나카르타 선언』. 서울: 도서출판 갈무리, 2012.
- Macpherson, C. B. 1973. *Democratic theory: Essays in retrieval*. London: Oxford.
- Macpherson, C. B. 1978. *Property, mainstream and critical positions*, Toronto: Th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김남두 옮김, 『재산권 사상의 흐름』. 서울: 천지, 1993.
- Mattei, U. 2011. *Beni comuni. Un Manifesto*. Roma-Bari: Laterza.
- Mattei, U. 2012. “First thoughts for a phenomenology of the commons”. *Socialisation and Commons in Europe*. (재수록 Bollier, D. and Helfrich, S. 2013. *The wealth of the commons: A world beyond market and state*. Amherst, MA: Levellers Press) 은혜 옮김, “공통체의 현상학에 관한 주요한 생각들”, <http://failbetter.tistory.com/13> (검색일: 2018. 11. 15)
- Mattei, U. 2013. “Protecting the commons: Water, culture, and nature: The commons movement in the italian struggle against neoliberal governance”. *South Atlantic Quarterly* 112(2), pp.366~376.
- Mattei, U. 2015. “Institutionalizing the commons. an italian primer”. *Global Activism: Art and Conflict in the 21th Century*. Cambridge, MA: MIT Press. pp.85~100.
- Mattei U. 2018. “Property meeting the challenge of the commons”. The 20th Congress of the International Academy of Comparative Law.
- Ostrom, E. 1986. “Issues of definition and theory: Some conclusions and hypothese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Common Property Resource Management, April 21-26, 1985*. Washington, D.C.: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pp.599~615.
-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윤홍근·안도경 옮김, 『공유의 비극을 넘어』.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2010.
- Quarta, A., and Ferrando, T. 2015. “Italian property outlaws: From the theory of the commons

시민과세계

- to the praxis of occupation”. *Global Jurist* 15(3). pp.261~290.
- Schlager, E., and Ostrom, E. 1992. “Property-rights regimes and natural resources: A conceptual analysis”. *Land Economics* 68(3). pp.249~262.
- Townshend, J. 2000. *C. B. Macpherson and the problem of liberal democracy*. Edinburgh, UK: Edinburgh University Press.
- Zanatta R. A. F. 2016. “International analyzes of the commons; three schools and their differences”. 2nd EMES-Polanyi International Seminar.
- Patti D. 2017. “Regulating the Urban Commons - What we can learn from Italian experiences”. <https://cooperativecity.org/2017/11/21/urban-commons-learning-from-italy/> (검색일: 2018. 11. 15)

